

## 주요국의 보편적서비스 무형편의 적용현황 및 시사점

백현미, 조은진, 송연경, 변재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lotes de tierra que compró en su nombre. — Señaló que el nombre ficticio era el de su hermano.

## **Status and Trends of Intangible Benefits of the Universal Service Obligations**

Back Hyunji, Chu Eungjin, Song Yeonkyeong, Hyun Jacho

[13]

요약

본 고에서는 국내 보편적서비스 제도 비용산정을 위한 논의 대상 중 하나인 무형편익 적용의 타당성을 짚어보고 이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무형편익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소수의 EU 국가에 한정되어 있고, 무형편익의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개발된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 무형편익 산정방법론의 문제점을 이유로 무형편익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각 국의 무형편익의 적용에 관한 규제기관의 입장을 비롯하여 무형편익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간단히 짚어보고, 국내 무형편익 적용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제시해보자 한다.

## 1. 서 론

보편적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보편적서비스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추가적인 편익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접적으로 받는 수익처럼 정의되거나 정량화되어 있지 않는 이득을 무형편익(Intangible Benefit)이라 한다<sup>1)</sup>. 이러한 무형편익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현재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그 사례가 국제적으로 극히 예외적이고, 호주나 뉴질랜드처럼 비교적 구체적인 산정방법론을 개발하고자 한 국가에서 조차 산정방법론의 문제점과 산정금의 미미함을 이유로 무형편익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EU Directive에서 무형편익 적용을 법제화하여 강제화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제적으로 무형편익의 적용에 관한 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현 고시에서는 보편적서비스 손실금 산정에 있어 일률적이 비율<sup>2)</sup>로 무형편익을 차감하여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보편적서비스 비용산정에 있어서의 무형편익 적용 타당성에 관한 논의와 산정방법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보편적서비스를 행하고 있는 주요국의 무형편의 적용여부를 비롯하여,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개발했던 무형편의 산정 모형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각 무형편의의 산정론과 논리적 근거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무형편의 적용의 타당성을 되짚어보고, 향후 보편적서비스 고시 개정에 있어 무형편의 적용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2. 무형평의의 개요

앞서 정의한바와 같이 무형편익이란 보편적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보편적서비스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추가적인 편익으로 공식화된 회계 절차를 따를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진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 생겨나는 무형편익은 아래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 1) OVUM의 정의

2) 시내전화의 경우 권역별 손실의 10%를 무형편익으로 차감함으로써 권역별 보정대상 손실을 산정함. (시내통증전화의 경우 30%)